

|       |             |
|-------|-------------|
| 의안번호  | 2219498     |
| 의 퇴 인 | 고민정의원       |
| 회 답 일 | 2026.07.28. |
| 추계번호  | 26C2952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6조의2제2항<br>제5의2호 신설<br>(이자의 면제) |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제2항).<br><u>5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u>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규정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16조의2제2항<br>제5의2호 신설<br>(이자의 면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가정 밖 청소년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이자만을 부담하고,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됨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sup>1)</sup>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대학생,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예산으로 603억 5,900만원이 편성됨
  - \* [참고자료 1] 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예산 세부내역
-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sup>2)</sup>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해당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sup>3)</sup>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139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1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18개소) 등이며, 2025년 기준 26,431명이 이용하였음
  - \*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청소년복지시설·연령별 이용자 수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자립지원)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정부의 이차보전 부담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원가정 복귀 및 재입소 등에 따른 중복 계상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고, 해당 인원이 현행법상 이자 면제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sup>4)</sup>에 따라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되어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추적 데이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시설 이용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상 이자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학생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만을 분리하여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Ⅲ. 부대의견

□ 없음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I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현수 | 문지은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정현수 | 02-6788-4627 | jhs@assembly.go.kr |

[참고자료 1] 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5     | '26     |
|----------------|---------|---------|
| 재원 조달 비용 지원    | 186,274 | 163,985 |
| 이전연도 채권발행분     | 192,174 | 191,374 |
| 당해연도 채권발행분     | 32,589  | 32,970  |
| 이자면제 지원분       | △38,489 | △60,359 |
| AI/SW분야 학업장려대출 | —       | 2,923   |
| 이자면제 지원        | 38,489  | 60,359  |
| 군이자면제          | 529     | 495     |
|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 5,547   | 4,921   |
| 다자녀 이자면제       | 17,731  | 18,640  |
|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 9,844   | 32,583  |
|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 4,838   | 3,720   |
| 합계             | 224,763 | 227,267 |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청소년복지시설·연령별 이용자 수

[참고표 1] 청소년쉼터 이용자 수

(단위: 명)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1세 이하 | 575    | 1,128  | 648    | 339    | 333    |
| 12-15세 | 5,731  | 8,170  | 6,886  | 6,110  | 7,830  |
| 16-18세 | 7,588  | 9,916  | 8,335  | 7,666  | 8,528  |
| 18세 초과 | 7,581  | 9,413  | 8,785  | 10,118 | 8,750  |
| 계      | 21,475 | 28,627 | 24,654 | 24,233 | 25,441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

[참고표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 수

(단위: 명)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1세 이하 | —     | 1     | —     | —     | —     |
| 12-15세 | —     | —     | 1     | —     | —     |
| 16-18세 | 27    | 25    | 52    | 40    | 33    |
| 18세 초과 | 439   | 490   | 531   | 584   | 601   |
| 계      | 466   | 516   | 584   | 624   | 634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

[참고표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 수

(단위: 명)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1세 이하 | —     | 5     | 3     | 2     | 1     |
| 12-15세 | 93    | 121   | 146   | 181   | 173   |
| 16-18세 | 159   | 208   | 172   | 184   | 173   |
| 18세 초과 | 17    | 24    | 12    | 10    | 9     |
| 계      | 269   | 358   | 333   | 377   | 356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